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사유

차량 중심의 교통환경을 사람 중심의 보행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보행권 확보는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관련 법령을 마련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보행환경과 관련한 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안 제4조)

다. 보행환경기본계획수립 및 그에 따른 추진사항(안 제5조~제11조)

라. 보행환경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과 수립시기 등(안 제12조~제15조)

마. 보행환경 개선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21조)

3. 참고사항 : 기 제정 시행중인 타 자치단체

서울특별시(1997년도), 부산광역시(2000년도), 부천시(2003년도), 김포시(2004년도), 청주시(2004년도), 마산시(2006년도), 광명시(2007년도), 천안시(2007년도), 영주시(2008년도), 안동시(2008년도) 등

4. 검토의견

본 조례의 제정 건은

- 차량 중심의 교통 환경을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구민의 보행권 확보는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시행하고 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우리구의 조례 제정은 시의 적절한 조치로 생각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 건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

2008. 11. 18

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여 기 선